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지식재산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2. 6. 10, 시행 2022. 12. 11.)됨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육성대상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신설(제26조)
 -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진흥·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요건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육성대상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 연구기관과 육성대상 법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곳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진흥·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실적이 우수한 곳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6조(육성대상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 연구기관과 육성대상 법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곳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진흥·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실적이 우수한 곳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925